

코로나19 소독 메탄올(공업용 알콜) 사용금지

□ 사고개요

2020.3.7.(토)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희석하여 분무기로 소독한 후 본인(엄마)과 자녀 2명 모두 복통, 구토, 어지럼증, 시야 흐림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받음

□ 사고원인

-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
- 소독장소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좁은 공간에 고농도 메탄올 증기 체류

□ 메탄올(CH_3OH , CAS No.: 67-56-1, 공업용 알콜)의 특성 및 건강영향

용도	• 포름알데히드 제조, 화공약품, 용제 및 연료로 사용
일반적 특성	• 코를 찌르는 듯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
노출경로	• 흡입, 피부흡수
유해성 · 위험성 	•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• 눈에 심한 자극 및 호흡기계 자극, 졸음 또는 현기증,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 • 신체 중 중추신경계, 소화기계 및 시신경 손상 •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 손상

□ 소독시 주의사항

- ▶ 메탄올은 심한 눈 자극과 실명 위험이 있고 호흡기계 자극,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▶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(살균소독제 204개)*을 자가소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자세한 상품명은 중앙방역대책본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(제3판, '20.3.20)의 표3-1~3-5(사용가능한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) 참조

< 자가 소독 방법 >

① 소독작업 수행하는 직원은 개인보호구* 착용

* 일회용 장갑, 마스크,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

② 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신고제품을 살균소독제로 사용

- 차아염소산나트륨이 5% 함유된 가정용 락스 사용시 물에 100배 희석하여 사용

③ 분무방식은 소독 효과가 낮고 흡입 할 수 있으므로 천으로 표면을 닦는 방식으로 소독

- 소독약을 적신 천(또는 종이타월)로 닦고 10분 이상 유지한 후 물을 적신 종이타월로 닦는다.

④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청소·소독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한다.

- 차아염소산나트륨(가정용 락스) 사용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

※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업장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